

성희롱 중단 법안 통지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 채용시 인권법에 의한 근로자 권리에 대한 포스터를 전시하고 개별 안내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문서를 사용하여 위 포스터 전시요건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NYC 인권법

NYC 인권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 중 하나로 직장, 가정, 그리고 상점과 레스토랑과 같이 많은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별에 의한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합니다. 인권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250,000 달러의 민사 벌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보상 및 기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의무 교육 이수 및 지역 봉사 활동 등과 같은 징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NYC 인권법 성립요건

성희롱은 성차별의 한 형태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투나 행동을 뜻합니다.

성희롱 예시

- 고객 또는 직원이 원하지 않는 행위 혹은 적절하지 못한 접촉을 하는 경우
- 성적 접근을 거부한 경우 그에 대한 협박 혹은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경우
- 개인의 외모, 신체 또는 의상에 대한 외설적인 언어 혹은 성적인 표현을 언급 하는 경우
-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승진등의 기회를 주는 경우
- 선정적인 사진이나 만화 또는 낙서등을 컴퓨터, 이메일, 휴대폰, 게시판등에 게시하는 경우
- 성별에 근거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NYC 인권법은 보복행위를 금지합니다

근무현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의 조치를 취하는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NYC 인권법은 피해 근로자가 법에 위반되는 성차별적인 행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 상대로 그 어떤 식의” 보복이나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낮은 직급으로 강임 혹은 해고 시키는 행동, 업무량 증가 및 비인기 지역으로 발령시키는 행위등은 보복 조치에 해당합니다. NYC 인권법은 근로자가 순수하게 고용주의 행동을 불법으로 오해한 경우까지도 고용주의 보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성희롱 신고

성희롱을 목격했거나 경험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부서장, 직장내 평등 고용 기회 담당자 또는 인사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성희롱은 NYC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십시오. 전화 (212-416-0197)를 하거나 NYC.gov/HumanRights 를 방문하여 불만을 접수하거나 차별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정보

성희롱은 공소시효가 각기 다른 뉴욕주법 및 연방법내에서도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뉴욕주 인권부에 신고 사항을 접수하려면 인권부 웹사이트(www.dhr.ny.gov)를 방문하십시오.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에 고소를 제기하려면 EEOC 웹사이트 (www.eeoc.gov)를 방문하십시오.